



[2015.6.17.] [1115 , 2014.12.16.,]

() 043-719-1854

1 () 「 」

2 () 「 」(" ") 5 1 1

. < 2013.3.23.>

1 .< 2013.3.23.>

1. 5 1 2 6

2. 19 1

3.

3 () 8 3

1. 8 2 (" ")가 , 「 」(" ") 7 2 가

2. 1

4 () 8 1

() ()

. < 2013.3.23.>

1. (3 1)

2. 1

(2)가 .

3

1 「 」 36 1

() .< 2010.9.1., 2013.3.23.>

1

3

2

.< 2013.3.23.>

5 () 4 8 1

30

3

(

)

(

) . < 2013.3.23., 2014.12.16.>

1. ,

2.

3.

4. ()

5. 1 2

가. ,

.가 3 1 . .

1 3
. < 2013.3.23.>

6 ()
4 ()
. < 2013.3.23.>

7 () 9 2
13

1.

2.

8 () 10 1 2

9 () 10 1 5

() ()

. < 2013.3.23.>

1. 2 1

2. 2 2 ()

3. 2 3

1 「 36 1
() . < 2010.9.1., 2013.3.23.>

1 8 6

. < 2013.3.23.>

10 () 9 10 1
8 30 7
() ()

. < 2013.3.23.>

1.

2.

1 8
. < 2013.3.23.>

11 () 4 ()
() . <

2013.3.23.>

12 () 12 1 ()
" ") 8 ()
() . < 2013.3.23.>

1. () ()

2. ()
1 「 」 36 1

< 2010.9.1., 2013.3.23.>

1 9

.< 2013.3.23.>

13 () 12 12 2 ()
30 10 ()
) . < 2013.3.23., 2014.12.16.>

1.

2.

3. ()

4.

5. 4 3 1 . .

1

.< 2013.3.23.>

14 () ()
4 ()
) . < 2013.3.23.>

15 () 13 2

13 3 .< 2014.12.16.>

1. , ,

2. , .

3.

4.

5. .

16 () 15 1 3

17 () 15 1 () ()
11 () ()
) . < 2013.3.23.>

1. 3 1

2. 3 2 ()

3. 3 3

1 「 」 36 1
() .< [2010.9.1., 2013.3.23.](#)>

1 16 12

.< [2013.3.23.](#)>

18 () 17 15

1 16 30 13

()

.< [2013.3.23.](#)>

1.

2.

1 16
.< [2013.3.23.](#)>

19 () 17

4

()

.< [2013.3.23.](#)>

20 () 17 1 , 가) 6

1 , 4 .
17 2 1

1. 23

2. 「 」

3.

4. 「 」 2

3

3

[[2014.12.16.](#)]

21 () 19 1 " " .< [2010.3.19., 2010.12.30., 2013.3.23., 2014.12.16.](#)>

1. 「 」 15 15
3 4

2. 「 」 2 2 4 1 , 2
3

가 19 2 14
()

.< 2013.3.23.>

22 ()
3

21

15

23 () 24 3

5

24 () 29
1

6

.< 2014.12.16.>

25 ()
(3)

3

.<

2014.12.16.>

- 1. 3 : 2014 1 1
- 2. 4 : 2014 1 1
- 3. 5 : 2014 1 1
- 4. 12 : 2014 1 1
- 5. 15 : 2014 7 1
- 6. 20 : 2014 7 1

[2014.4.1.]

< 1115 ,2014.12.16.>

1 () 6

2 ()

20 1

6

3 ()

1

6

1

5

13

[별표 1] <개정 2014.12.16.>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제3조제2호 관련)

1. 용어의 정의

가. "분리(分離)"란 두 개 이상의 건물이 서로 충분히 떨어져 있어 공기의 입구와 출구가 간섭받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고, 한 개의 건물인 경우에는 벽에 의하여 별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작업원의 출입구나 원자재의 반출입구가 서로 다르고, 공기조화장치가 별도로 설치되어 공기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를 말한다.

나. "구획(區劃)"이란 동물실험시설 내의 작업소와 작업실이 벽·칸막이 등으로 나누어져 공정간의 교차오염 또는 외부 오염물질의 혼입이 방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작업원과 원자재의 출입 및 공기조화장치를 공정성격에 따라 공유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 "구분(區分)"이란 공간을 선이나 줄, 칸막이 등으로 충분한 간격을 두어 착오나 혼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나누어진 상태를 말한다.

2. 동물실험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각 시설은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육실

- 1) 실험동물의 종류별로 사육실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야 한다.
- 2) 실험동물의 종류와 수에 따라 개별 동물의 사육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적절한 재질의 사육상자 또는 사육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내벽과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편리한 마감재를 사용하며 균열이 없어야 한다.

4) 바닥은 요철이나 이음매가 없어야 하고 표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5) 천정은 이물이 쌓이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실험실(동물의 부검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 동물의 부검이나 수술에 사용하는 물품, 기구, 시약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부검대 등의 실험동물 부검이나 수술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부대시설

1) 사료 및 사육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구획 또는 구분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소독제, 청소도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구획 또는 구분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동물 사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분리 또는 구획된 공간과 장비 또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동물실험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작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동물실험시설 운영관리

1) 동물실험시설의 점검 및 소독

2) 동물실험시설의 이용 및 교육

3)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운영

나. 실험동물 사육관리

1) 실험동물의 취급 및 사육관리

2) 실험동물의 검역 및 순화

다. 안전관리

1) 종사자 건강 등 안전관리

2) 재해 유발 가능물질 및 생물학적 위해물질 취급 및 관리

3) 응급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별표 2]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기준(제8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두어야 한다.
 - 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 자격을 갖춘 수의사(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다) 1명 이상
 - 나.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동물실험을 관리 또는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사무실, 사육실, 실험실, 검역실, 수술실, 부검실, 세정실, 창고, 샤워실 및 폐기물보관실을 갖출 것
 - 나. 각 시설에는 온도, 습도, 환기 등 사육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설비를 두고 소독을 위한 설비를 갖출 것
 - 다. 외부로부터 오염원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계적인 장치나 설비를 갖출 것
 - 라. 사육실은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벽 등으로 분리하고 실험동물의 종류별로 사육실을 구획할 것
 - 마. 사육실의 바닥과 벽은 청소나 소독이 편리한 마감재를 사용하고 조명설비 등으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 바. 세정실은 사육상자 등을 세척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나 설비를 갖추는 것

사. 실험동물의 외부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점검, 사육환경 관리, 실험동물의 사육 관리 및 수의학적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표준작업서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3]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제16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두어야 한다.

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 자격을 갖춘 수의사(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다) 1명 이상

나.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동물실험을 관리 또는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사무실, 생산실, 검역실, 세정실, 창고, 샤워실 및 폐기물 보관실을 갖출 것

나. 각 시설에는 온도, 습도, 환기 등 사육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설비를 두고 소독을 위한 설비를 갖출 것

다. 외부로부터 오염원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계적인 장치나 설비를 갖출 것

라. 생산실은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벽 등으로 분리하고 실험동물의 종류별로 생산실을 구획할 것

마. 생산실의 바닥과 벽은 청소나 소독이 편리한 마감재를 사용하고 조명설비 등으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설치할 것

바. 세정실은 사육상자 등을 세척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나 설비를 갖추는 것

사. 실험동물의 외부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실험동물생산시설의 운영점검, 사육환경 관리, 실험동물의 생산관리·품질관리 및 수의학적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실험동물생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표준작업서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14.12.16.>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제20조제3항 관련)

교육 과 목	교육 내 용	교육 방 법	교육 시 간
실험동물과 동물실험 제도	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해설(등록·지정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한다) 나.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실험동물공급자, 관리자 및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의 준수 사항	강의 (집합)	1
동물실험시설 등의 운영관리	가. 동물실험시설의 기준 및 운영 나. 실험동물생산시설의 기준 및 운영	강의 (집합)	1
실험동물 운영위원회	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제도 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의 (집합)	1
실험동물의 품질관리 방안	가. 실험동물의 미생물 검사 등 품질관리 나. 실험동물 사육 관련 물품 등의 품질관리	강의 (집합)	1
실험동물의 복지와 동물실험의 윤리	가. 실험동물의 취급과 관리 나. 동물실험의 수의학적 관리 다. 실험동물의 복지와 동물실험의 윤리	강의 (집합)	2

비고: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은 동물실험시설 설치자가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위 표에 따라 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13.3.23>

행정처분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운영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위반의 정도, 국민의 건강이나 공익에 대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행정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된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2. 동물실험시설로부터 또는 실험동물 공급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 또는 공익을 해하는 질병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시 설 의 운영정지 또는 영 업 정 지 1개월	시 설 의 운영정지 또는 영 업 정 지 3개월	등록취소
3.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된 자가 법 제11조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경고	시 설 의 운영정지 또는 영 업 정 지 3개월	등록취소
4. 우수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지정취소		
5. 우수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부터 국민의 건강 또는 공익을 해하는 질병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시 설 의 운영정지 1개월	시 설 의 운영정지 3개월	지정취소
6. 우수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1조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4조 제2항 제3호	경고	시 설 의 운영정지 3개월	지정취소

[별표 6] <신설 2014.12.16.>

수수료의 금액(제24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9,000원	10,000원
2. 제5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변경등록	4,000원	5,000원
3. 제9조에 따른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190,000원	200,000원
4. 제10조에 따른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사항 변경	95,000원	100,000원
5. 제12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9,000원	10,000원
6. 제13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등록	4,000원	5,000원
7. 제17조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190,000원	200,000원
8. 제18조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사항 변경	95,000원	100,000원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2.16.>

동물실험시설 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시설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운영자	성명	생년월일
시설현황	<input type="checkbox"/> 사육실 <input type="checkbox"/> 실험실 <input type="checkbox"/> 부대 시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실험시설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설의 배치구조 및 면적 등 동물실험시설 현황 1부	수수료 10,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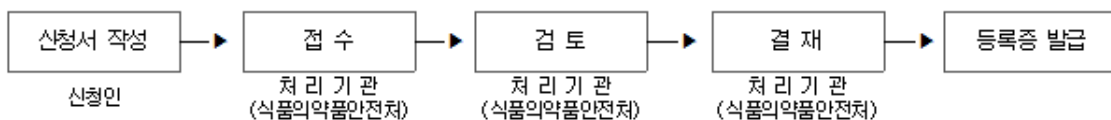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결용품)]

제 호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1. 명칭(상호):
2. 소재지:
3. 설치자(대표자):
4. 운영자:
5. 관리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실험시설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 (1종) 120g/㎡]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2.16.>

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시설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일

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사유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실험시설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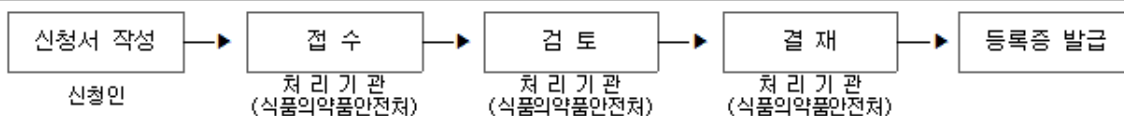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원본 1부 2. 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관리자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5,000원
------------------	---	---------------

유의사항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16.>

- []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 []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 []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시설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사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증 또는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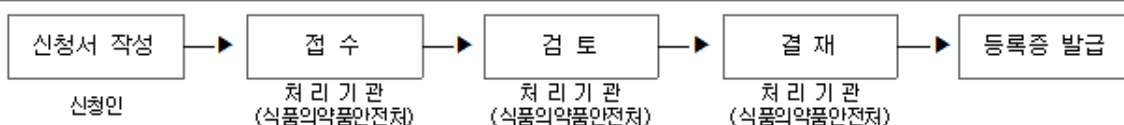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또는 우수실험	수수료
제출서류	동물생산시설 지정서 원본 1부(철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유의 사항

등록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 또는 지정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2.16.>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정시설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인력의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과 배치도면(장치와 설비를 포함한다) 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에 따른 표준작업서 1부 	수수료 200,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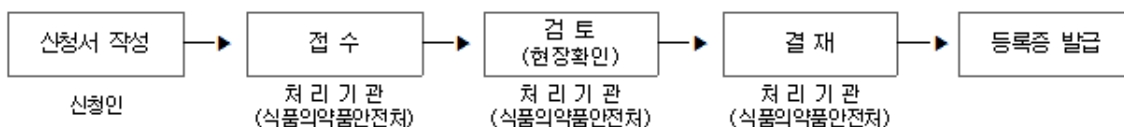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12.16.>

(앞쪽)

제 호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1. 명칭(상호):
2. 소재지:
3. 설치자(대표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2.16.>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시설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지정번호		지정일

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사유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동물실험시설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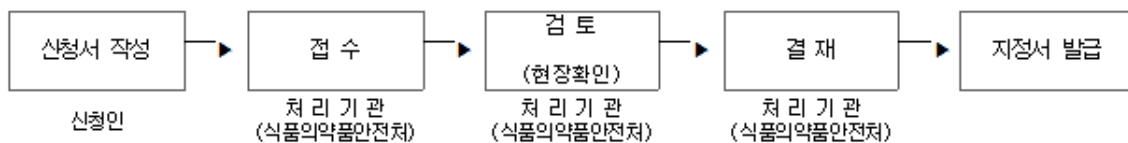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원본 2.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별표 2 제1호 각 목의 인력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변경 사유 및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100,000원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12.16.>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시설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내용	구 분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
	생산자	생산동물의 종류 :
	수입자	수입동물의 종류 :
	판매자	[]국내동물 []수입동물 []국내동물+수입동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실험동물생산시설(실험동물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실험동물보관시설(실험동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의 배치구조 및 면적 2.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현황(조직과 직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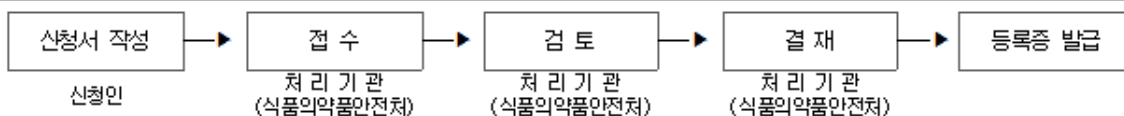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 [백상지 80g/㎡(재결용품)]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12.16.>

(앞쪽)

제 호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1. 명칭(상호):
2. 소재지:
3. 대표자:
4. 등록내용: [] 생산자 [] 수입자 [] 판매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12.16.>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시설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일	

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사유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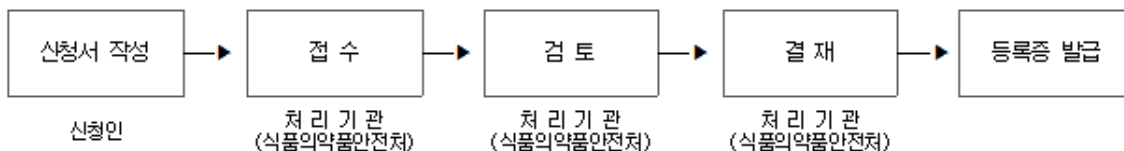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원본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5,000원
------------------	---	---------------

유의 사항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12.16.>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정시설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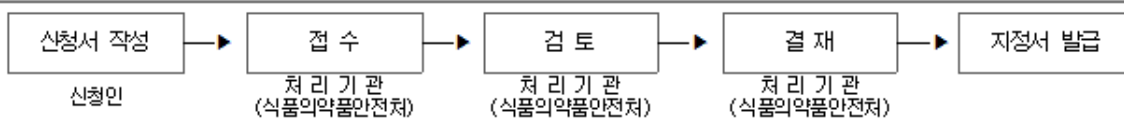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인력의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과 배치도면(장치와 설비를 포함합니다) 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에 따른 표준직업서 	수수료 200,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 [백상지 80g/㎡ (재활용품)]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12.16.>

(앞쪽)

제 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

1. 명칭(상호):
2. 소재지:
3. 대표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변경 및 처분사항 등

연월일	내용	확인(서명 또는 인)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13호서식] <개정 2014.12.16.>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시설	명칭(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일		

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사유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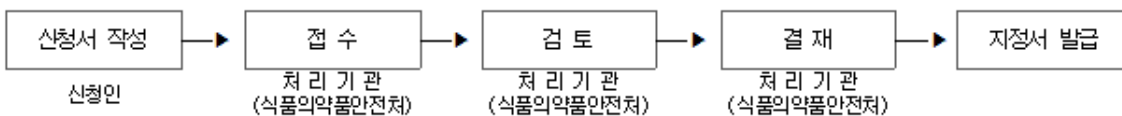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 원본 2. 자격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별표 3 제1호 각 목의 인력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변경 사유 및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100,000원
------------------	--	-----------------

처리절차



210mm × 297mm [백상지 80g/㎡ (재결용품)]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12.16.>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보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시설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일	
	시설의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른		
실험과제	과제명		
	실험기간		
	실험책임자		
생물학적 위해물질	위험군 분류 [] 제3위험군 [] 제4위험군 ※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른		
	병원체 분류 [] 제1군감염병 [] 제2군감염병 [] 제3군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생물체 또는 병원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보고인(대표자)	동물실험계획서 1부
제출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15호서식] <개정 2014.12.16.>

동물 실험 현황

실험과제	과제명(국문)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승인번호
	실험책임자
	실험기간

일련 번호	일자	실험동물				목적	비고
		종류	계통	성별	사용량 (마리 수)		

작성 시 유의 사항

동물실험을 수행한 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에 운영자에게 동물실험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체계에 따라 위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